

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아 래 ■

- 1.일 시 : 2018년 2월 19일 (월) 오전 09시
- 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- <보고안건>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- <부의안건>

- 제1호 의안 : 제60기(2017년 1월 1일 ~ 2017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
-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- 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 -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전 태 준	1947년6월 12일	현, 포천중문 의과대학 대외협력 원장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재선임
김 유 경	1958년6월 15일	전, 국가브랜드연구센터 센터장 현,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재선임

제5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전 태 준	1947년6월 12일	현, 포천중문 의과대학 대외협력 원장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재선임
김 유 경	1958년6월 15일	전, 국가브랜드연구센터 센터장 현,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재선임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18년 2월 2일



대표이사 강호찬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붙임 : 제 3 호 의 안 : 정 관 일 부 변 경 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
<p>제 4 조 (공 고 방 법)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www.nexentire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"매일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</p>	<p>제 4 조 (공 고 방 법)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www.nexentire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"매일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</p>
<p>제 10 조 (주 식 의 발 행 및 배 정) ②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 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 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 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 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제 10 조 (주 식 의 발 행 및 배 정) ②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 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 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 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그 납입기일의 1 주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
<p>제 39 조 (이 사 회 의 결 의 방 법)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 39 조 (이 사 회 의 결 의 방 법)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
<p>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